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21. 8. 13.>

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(검사면제) 증명서

발행번호 제 호

신청인	비료수입업 신고번호	
	상호 또는 법인명	성명(대표자)
	주소 (전화번호:)	
수입비료	종류 및 명칭	HS번호(품목번호)
	도 착 일	선하증권(Bill of Lading) 물량 kg
		선하증권(Bill of Lading) 번호
	도 착 항	수 출 국
	용 도	
검사성적	성 분 명	함 량
	합격여부 [ ] 합 격 [ ] 검 사 면 제	

「비료관리법」 제10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해성검사에 합격(검사면제)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농업과학원장 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